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26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의2 신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 력개발훈련과정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 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나.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한 이양,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안 제39조제3항, 안 제39조제5항, 제39조의2 및 제50조제2항 신 설)
 - 1)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2)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력과 경력 자격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 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안 제62조제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소 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르면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률 제 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16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 인정·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 2.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제19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 인정·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 2.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제24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 인정·승인"으로 하

-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 2.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제3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라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등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계획서에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훈련계획서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3.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인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 2.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3.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서의 승인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기간·내용, 훈련 시설 등훈련계획서 승인의 요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31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 또는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승인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제3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제19조제3항 ·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 또는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승인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37조제2항제3호 중 "인정받는"을 "인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능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을 폐지하거나 기능대학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기능대학 분교의 설치) ①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국내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능대학 분교의 설립·경영 인가, 설립기준, 폐지 및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대학"은 "기능대학 분교"로 본다.

제40조의2제4항 중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같은 계열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능대학(국가가 설립한 기능대학은 제외한다)의 중요 사항 변경 인가에 관한 권한(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5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실시한 자
- 제5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호, 제24조제2항 각호 또는 제24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가.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 나.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 다. 제24조의2에 따라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된 자"를 "취소된 자,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훈련계획서 승인이 취소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중 "인정을 받은"을 "인정을 받거나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또는"을 "자,"로, "취소된 자"를 "취소된 자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 공직업훈련시설"을 "제27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지정직업훈 련시설"을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24조의2에 따라 훈련계획서 승인을 받은 자

5.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59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한다.

제6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5조

제1항"을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의2.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훈련계획서 승인의 취소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호, 제29조제6호, 제56조제5항 및 제5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학위전공심화과정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 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기능대학 설립 추천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능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제4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한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56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청문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2조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1.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u>훈권</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	<u>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u>
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u>인정·승인</u>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	
<u>련과정의 인정</u>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신 설></u>	1.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u>훈련의 위탁</u>
<u><신 설></u>	2.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

<신 설>

- ④ ~ ⑥ 삭 제
- ⑦ (생략)
-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 정취소 등) ①·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u>신 설></u>

<신 설>

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
정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
<u>ㅇ</u>)
③
<u>다음 각</u>
호의 위탁이나 인정·승인
1 제16조제1하에 따르 지어누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위탁
- 2.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 ④·⑤ (생 략)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 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⑤ (생략) <신 설>

	④·⑤ (현행과 같음)
제	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u>
	호의 위탁이나 인정ㆍ승인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위탁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④·⑤ (현행과 같음)
제	2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서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
	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등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 련과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포함된 직업능력개 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훈 런계획서에 포함된 직업능력개 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제24조제 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훈련계획서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 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3.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 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실시한 경우
-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다음 각 호의 위탁이나 인정・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 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1. ~ 5. (생 략)
- 6.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위탁
2.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
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3.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서의
<u>승인</u>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
간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기간·내용, 훈련
시설 등 훈련계획서 승인의 요
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u>
1. ~ 5. (현행과 같음)
6. 제31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8. (생 략)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 · 제24 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 을 받고 있는 자

10. (생략)

-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생 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 소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
 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
 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
 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이 취소된 경우

7.·8. (현행과 같음)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
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 또는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승인
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현행과 같음)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 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 또는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승인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

6. • 7.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 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 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 야 한다.
 - 1. 2. (생략)
 -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u>인정받는</u> 제20조 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 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 에 한정한다)
 - ③ ④ (생 략)
-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② (생 략)
 -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u>고용노동부장관</u> 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의 능력개발)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2. (현행과 같음)
3
인정(제24조의2제2
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능대학 소재지
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

④ (생 략) <신 설>

⑤ (생략) <u><신 설></u>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 ③ (생 략)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 수 있는 사람은 <u>같은 계열의</u>기

별자치도<u>지사</u>-----

- ④ (현행과 같음)
- 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을 폐지하거나 기 능대학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39조의2(기능대학 분교의 설치)
 - ①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국내에 분교(分校)를 설치 할 수 있다.
 - ② 기능대학 분교의 설립·경영 인가. 설립기준. 폐지 및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 대학"은 "기능대학 분교"로 본 다.

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 다음 각 호의 요

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u><신</u>설>

⑤ (생략)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 | 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

건을 모두 갖춘	

- 1.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 나 같은 계열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교육부장관은 제39조제5항 에 따른 기능대학(국가가 설립 한 기능대학은 제외한다)의 중 요 사항 변경 인가에 관한 권한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에 대한 평가) ① -----

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3. • 4. (생략)

②・③ (생략)

-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 7 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생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 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 제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렁으로 정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
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현행
과 같음)
②

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 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 1. (현행과 같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 제2항 각 호, 제2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 또는 승인 이 취소된 경우
 - <u>가.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u> <u>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u> 하는 자
 - 나.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
 - 다. 제24조의2에 따라 훈련계 획서의 승인을 받아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 3. (현행과 같음)

3. (생략)

-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생 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 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 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 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 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 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 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 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 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취소된 자, 제24조의2제3항</u>
에 따라 훈련계획서 승인이 취
<u>소된 자</u>
•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1. ~ 3. (생략)
-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 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고용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 한 경우에는 <u>국세 또는 지방세</u> <u>체납처분의 예</u>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생략)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 본 부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u>자 또</u> 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

1. ~ 3. (현행과 같음)
4
인정을 받거나 제24
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계획
서의 승인을 받은
5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⑥ (현행과 같음)
세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
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u>자,</u>
<u>취소된 자 및 제</u>
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
<u>소된 자</u>

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 지 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지도·감독을 할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 4. <u>공공직업훈련시설</u>을 설치· 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u>지정직</u> 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4조의2에 따라 훈련계
획서 승인을 받은 자
4. 제27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
시설 제28조
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런법인

6.	· 7.	(생	략)
O.		\ 0	1/

② ~ ⑤ (생 략)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 조, 제22조, 제23조, <u>제24조</u>, 제28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신 설>

- 2. ~ 4. (생 략)
- 5. <u>제35조제1항</u>에 따른 직업능 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 6.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제24조, 제24
조의2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청문)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훈련계획서 승인의 취소
2. ~ 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u> </u>